

방미통위원장, 휴대폰 계약서 직접 써보니

- 제도 개선 이후 이행 상황 점검...이동통신 단말기 유통현장 방문 -

“제도 개선으로 계약 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많아진 만큼,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쉽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서울 대학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입, 계약서를 작성해 보는 등 이용자 입장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등을 직접 점검했다.

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지난달 28일 시행됨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현장을 방문해 제도 이행 상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며 이용자 권익 보호 규정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됐으며,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및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계약 내용 고지 강화 등이 시행령에 담겼다.

지원금은 자율화하되 계약정보 제공 의무 등 이용자 보호제도는 강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마련된 이번 시행령은 휴대폰 이용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과 금지되는 구매 지원금 차별 지급 유형,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을 규정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용자인 국민 입장에서 휴대폰 유통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의 이행 상황 점검 및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이번 방문에 나섰다.

특히 이날 대학로에 위치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단말기 선택부터 요금제 및 지원금 안내, 부가서비스 설명, 계약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안내와 계약서 명시사항 등을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제도 개선으로 계약 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많아진 만큼,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쉽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면서 “사업자들은 계약 내용과 지원금 조건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 확대된 시장 경쟁 상황 속에서 이용자 보호 중요성도 그만큼 커졌다”며 “이용자가 지게 되는 최종 부담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 관점에서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유통점 관계자들로부터 제도개선 이후 나타나는 애로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방문 결과를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에 반영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상시 점검 등 이용자 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시장조사심의관 조사기획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미정 (02-2110-1540)
		담당자	사무관	권남준 (02-2110-1541)
	시장조사심의관 통신시장조사과	책임자	과 장	전혜선 (02-2110-1530)
		담당자	사무관	전혜정 (02-2110-1535)



구분	주요내용
<p>지원금 차별금지 유형 및 기준 (제37조의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가입조건(가입유형, 요금제, 단말장치)임에도 ①이용자 주소 등 거주 지역, ②나이, ③장애 등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안하는 것을 금지 ○ 도서·벽지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음
<p>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37조의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말기 유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이동통신단말장치등 유통 시장 모니터링 방안, ▲이용자 피해 예방, 교육 및 회복과 관련된 사항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자율 규제 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시책에 포함 ○ 이통사·제조사는 시책 수립과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방미통위는 이통사·제조사에 시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공무원,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사, 관련 단체 등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협의체를 구성 ○ 협의체는 ▲시책 수립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시책 준수 방안의 제안, 시책 시행 현황의 점검 및 개선사항의 건의, ▲유통실태 개선 권고 이행 방안 등의 업무를 수행함
<p>계약서 명시사항 (제37조의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분할상환 수수료 및 월 할부금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된 계약 내용 및 할부 조건 ▲지급 주체 및 지급 방식 등 지원금의 세부 사항, ▲이동통신서비스의 약정기간, 요금제 및 연계된 부가서비스 등의 명칭·금액, ▲인터넷·유료방송 등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함